

보충시정질문(답변)서

【주민생활지원국】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다른 사단법인에서 임원으로 위촉시 응할 용의는 ?
- 대한체육회와 부천시체육회 이사의 수가 상충되는 이유와 미안마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동행한 사안에 대한 질문 ?

(답 변)

-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그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며 여타 사단법인이 내부 규정이나 규약으로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한다 하여도 임의로 회장직을 수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이사의 구성인원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시·도지부에 관한 규정 제18조에는 각 급 체육회 이사 수를 20인 이상 47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체육회 시·군지부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호에서 시·군지부의 규약은 경기도체육회의 규약에 준하여 각 지부 실정에 맞추어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내 시·군 체육회의 이사구성 현황을 확인한 바 김포시 등 12개 시·군이 50인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체육회장 선임 근거에 관하여는 기 답변 드린 바 있으나 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법제처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후 확인토록 하겠음.
- 미안마에 동행한 체육회 사무국 직원은 기간 중 연가를 득하고 개인 비용으로 다녀 온 것이 확인되었음.

【도 시 국】

□ 질문의원 : 한윤석 의원

- 표고를 제외하고 임목 수나 경사도에 이미 저축되어 허가가 곤란한 해당 토지 자료 제출 바람.
-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불가능하고 도로 개설목적이 맞지 않으면 개설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표고제한을 완화하여도 타 기준에 의하여 거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허가가능한 곳은 심곡본동 617-198, 199번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표고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무질서한 난개발과는 전혀 관계없음
- 기 개발토지의 재건축시 표고제한에 저축되어 건축허가 불가능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고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 바람.

(답 변)

- 표고를 제외하고 임목수나 경사도에 이미 저축되어 허가가 곤란한 토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련 기준인 임목본수도, 경사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전수조사(신청 필지내 나무 수량 및 지름 측정, 측량에 의한 지형도 작성 등)를 하여야 파악 할 수 있으며,
- 또한 신청위치 규모 등의 변동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순히 도상으로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실제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규모가 확정되고 현지 출장하여 경사도 측량 및 현지 나무수량 및 지름을 측정하여야 판단할 수 있어 자료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진입도로가 없고 타 기준의 저축으로 표고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도 개발가능 토지가 거의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 답변 드린 바는 진입도로가 없다하여도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함을 답변 드린 사항이며,
- 표고제한 규정 삭제시 임목본수도, 경사도에 저축되어 개발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개발육구 자극으로 무단 벌채, 은밀한 임목고사, 50cm이하의 절성토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충족시켜 개발하고자 하여 심각한 녹지 훼손이 우려됨.

○ 기 개발토지 재건축 제한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표고제한 규정 삭제 등 전향적인 부천시 의견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 개발된 토지에 대한 재건축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계획은 가능하며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와도 부합하는 규정임.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을 75m(녹지지역 65m)로 제한한 것은 우리시의 부족한 녹지의 보존 및 도시경관 보호 등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며,
-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된 사건 당사자가 표고관련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법부(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녹지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해 엄격한 허가기준을 설정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없다는 판례가 있었음.
- 이미 여러 차례 시정질의를 통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표고제한 규정은 무분별한 난개발방지와 녹지훼손, 도시경관 훼손 등 도시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 유지 할 필요가 있어 표고제한 규정 삭제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변경은 불가함.

【건설교통국】

□ 질문의원 : 강일원 의원

- 택시와 일반 자가용의 주정차 단속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택시가 정차를 해서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2008년 1월 2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주재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음.
이 자리에는 주수종 의원님과 부천시범인택시조합협의회 회장단,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기획팀장, 교통지도팀장이 참석하였음.
- 이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CCTV가 설치된 30개소 중 택시승강장이 위치한 곳에서는 단속을 유보하는 것과 택시승강장을 확충하는 것이었음.
- 우선 택시승강장이 위치한 곳에 대한 조치는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부천북부역 앞과 국민은행 앞 2개소가 해당이 되어 즉시 단속을 유보하였음.
- 또한 택시승강장 확충은 2008년 1월 30일 부천시범인택시노동조합협의회 회장단과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측에서 요청한 27개소 중 우선 10곳을 선정하였으며 경찰서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치하기로 하였음.
- 현재 택시승강장 설치된 이외의 지역 중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는 지역의 대부분은 교통혼잡 지역이며, 이 지역은 택시 및 기타 불법주정차 차량이 혼재되어 있어 택시만 단속 유보시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과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택시조합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가겠습니다.

□ 질문의원 : 신석철 의원

- 지하철7호선 홍보물 게첨 답변 내용중 「대통령직 인수위 정책에 반영하기위하여」에는 대통령 취임일 2.25일 이전에 현수막 홍보물을 게첨 했어야 하는데 2.25일부터 ~ 3.31일까지 게시토록 한 행정행위의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 답변내용 제출바람.
- 통상적 행정행위, 선거법위반 없는 현수막 홍보물을 3.31일 이전에 철수한 이유와 구체적 동별 철수일 답변바람.
- 본의원은 2004년 당시 「도시철도」로 시작한 현7호선이 2004. 12. 30 ~ 2010. 12. 31일까지 완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지하철 7호선이 2007년 27% 2008년 39%의 재정 확보된 상황이며 시민을 위하여 재원마련에 힘써야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원인적 차원이 아닌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부천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하철7호선이 2004년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도시철도도 2010년에 완공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광역철도에 매달렸다면 2015~2020년에 지하철7호선이 생기는 모순에 당면 할 것이라고 보는데, 광역철도에 해당하는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는 국회의원, 도의원을 위하여 현 부천시장님도 2004년 부천시장 이었다면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천명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 변)

- 첫 번째 질문인 지하철7호선 홍보물 게첨 내용 중 「대통령직 인수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 취임일 2.25일 이전에 현수막 홍보물을 게첨 했어야 하는데 2.25 ~ 3.31일까지 게시토록 한 행정행위의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관련 시민홍보물” 현수막을 게첨하게 한 것은 시민홍보 계획에 의거 2. 25 ~ 3. 31이 아닌 2008년 2. 1부터 3. 31까지 2개월간 게첨 하도록 하였음.
- 두 번째 질문인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 구체적 답변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음.
-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8년 3. 14일 회신된 공문을 제출하겠음.
- 세 번째 질문인 통상적 행정행위, 선거법위반 없는 현수막 홍보물을 3. 31일 이전에 철수한 이유와 구체적 동별 철수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현수막 홍보물은 지금도 게첨 되어 있으며 철수를 지시한 적이 없음.
- 네 번째 질문인 2004년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 부천시장도 2004년 부천시장이었다면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천명하여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2004년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 시장이 당시의 시장이었다면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의 추진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본 지하철 연장공사는 인천시도시철도 3호선계획에서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을 거쳐 인천대공원까지를 구간으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인천지하철 사업구간이었음.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본 공사가 무한 연기하는 것으로 하자 1999년부터 부천시가 이를 추진하게 된 것임. 그리고 기왕 시작한 사업이기에 그때 상황을 탓 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반드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완공 시키고자 함.
모든 분들의 사심 없는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